

#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68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9. 5.

발 의 자 : 노영호 의원  
외 6 인

## 1. 제 안 이 유

- '98. 8. 31일 대통령령 제15,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
- 안산시 지방행정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와 관련하여,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총 정원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 요 골 자

- 안산시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함.  
(안제1조 ~ 안제5조)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의하여 안산시 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조례입안 및 의정활동과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직원) ①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및 직원(이하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을 두며,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4조(사무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2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조례입안 및 의정활동과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직원)①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및 직원(이하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을 두며,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  
②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4조(사무직원의 정수)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2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